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74, 975
----------	----------

2019년 09월 0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8. 07.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19. 08. 13.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09월 04일 상정(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강병호 복지정책실장)

1.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기관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나. 현 수탁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영등포역 일대는 대표적인 노숙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뢰 권한을 가진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숙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음.
- 나. 영등포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 다. '19.12.31.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되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의 기능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위탁사무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행정사무위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광역자활센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
- 추진 필요성
 - 서울지역 30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재무경영 컨설팅과 아이템 개발 등을 지원하고,
 - 2개 자치구 이상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홍보·관로개척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촉진 관련 전문성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자활 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및 알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 3층
- 이용대상: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모집단에 선정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단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 02. 07 ~ 2023. 02. 06)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적격자 심의

사. 소요예산 : 1,136백만원 (일반회계 548백만원 / 기금 58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재위탁 공모시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생략할 수 있음.

2.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운영(신규)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들에게 임시적인 잠자리 및 기초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리상담 활동, 응급구호, 무료 진료소 운영,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진행함.

-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 영등포 무료진료소 운영 및 의료지원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수유동)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거리노숙인
- 위치도



지역여건	노숙인 밀집지역인 영등포역에서 800m(도보 13분) 거리로 주변 거리노숙인 관리에 용이하며 인근에 주택가가 없고 기존에 노숙인 자활시설로 운영되던 건물이라 민원발생 우려도 적음
------	---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17. 01. 01 ~ 2022.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2,425백만원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2,100백만원

- 무료진료소 : 32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IV. 참고사항

1.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2.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V.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제289회 금번 복지정책실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1건, 최초 위탁 1건 등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¹⁾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재위탁 · 재계약의 정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는 행정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효과성 평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복지정책실에서 금번 제출한 성과보고서 내용에서 표시하고 있는 사업 효과성 평가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2018년도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시 지적했던 기관운영 지표와 사업운영지표상의 정성적 지수를 정량화 지표로써 표시되도록 했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없음.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위탁업무의 사업자 선정 시 또는 선정 이후 수탁자의 업무집행능력 및 자체 내부시설 경영능력 등을 유사 민간 운영시설과 비교하는 등의 민간위탁시설 수탁자로서 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나 전년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검토보고서로 제출되었다는 점은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서울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점수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공공 사무 평가	1. 사업인프라	1-1. 조직 및 인력 운영	5.00점	-	4.01점
		1-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50점	1.88점
		1-1-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점	2.13점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5.00점	-	3.55점
		1-2-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3.00점	2.25점
		1-2-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점	1.30점
		1-3. 사회적 가치 기여	12.00점	-	8.86점
		1-3-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00점	4.73점
		1-3-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및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		2.50점	2.13점
	1-3-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점		2.00점	
	2. 사업활동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7.00점	-	4.88점
		2-1-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0점	1.38점
		2-2-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2.00점	1.50점
		2-2-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50점	2.00점
		2-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8.00점	-	5.95점
2-2-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3.00점		1.95점	
2-2-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점		2.00점	
2-2-3.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점	2.00점			
개별 사무 평가	3. 사업성과	3-1. 사업성과 평가결과(합계)	40.00점	-	32.72점
		3-1-1. 광역사업 육성실적	20.00점	-	15.48점
		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4.00점	3.20점
		②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4.00점	2.60점
		③ 신규 자활 사업 보급률		3.00점	3.00점
		④ 자활근로사업단 네트워크 지원성과 (1) 자활근로사업단 네트워크 지원 건 수 (2) 자활근로사업단 네트워크 지원 금액		4.00점 (2.00점) 2.00점	3.75점 1.75점 2.00점
		⑤ 광역형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1)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횟수 (2)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매출액 (3)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참여기업		5.00점 (2.00점) (2.00점) (1.00점)	2.93점 1.46점 0.86점 0.61점
		3-1-2. 경영지원 및 교육지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성과	20.00점	-	17.24점
		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4.00점	3.20점
		②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4.00점	2.60점
		③ 경영지원 실적		4.00점	3.89점
	④ 교육 운영 실적	4.00점		4.00점	
	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4.00점	3.55점		
	3-2.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합계)	3.00점	-	2.55점	
	4. 지도점검 이행노력	4.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결과(합계)	5.00점	-	3.68점
		4-1. 지도점검 이행률		2.50점	2.05점
		4-2. 지도점검 이행노력		2.50점	1.63점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민간위탁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탁자 업무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에서 관리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특별한 문제점 없는 한 연속하여 재계약·재위탁되어 장기간 수탁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방침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등 무사안일한 위탁 사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규 시설 및 재위탁·재계약 시 수탁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표를 표기함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동의안 대상사무 검토

가.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서울지역 30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재무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개 자치구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홍보·판로개척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함.
- 현 수탁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사무위탁을 하려는 것임.

<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 3층(목동)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및 알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위탁기간 : 2020.02.07 ~ 2023.02.06.(3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136백만원 (일반회계 548백만원, 기금588백만원)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활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범위는 ①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창업 및 사업지원, ②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지원, ③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④자활생산물 홍보·관로개척·전시회 개최, 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 지원, ⑥기타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 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보호전문 초기 설립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전략이 계획적이며 각 사업별 목표 및 하위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짐.

- 집행부의 자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 있는 제3자 위탁사업은 없는 것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4조(직원 등의 자격 및 임용기준)에서는 직원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는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그 외의 인력 또한 지역사회복지 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함으로써 자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구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 요소임.
- 다만, 집행부 자체 평가의 지적 사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서울시 회계감사 결과, 2017년에는 직급별 기준호봉 소급적용 불가로 인한 환수조치 필요,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회식 명목으로 예산집행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 2018년에는 보조금 부적절 사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및 복무관리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해당 지적사항은 사업예산 집행 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당해 연도 실적 평가를 차년도 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 간의 추세 및 실질적 목표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목표 설정을 하는 등 행정적 편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나.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영등포 지역은 대표적 노숙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뢰 권한을

가진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노숙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만성 노숙인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서남권 7개 자치구에 산재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필요성 등 영등포 노숙인 밀집지역인 영등포지역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여 거리노숙인 응급보호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를 목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5년간(2020. 1. 1. ~ 2024. 12. 31.) 아래표와 같이 사무위탁을 하려는 것임.

< 영등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 영등포 무료진료소 운영 및 의료지원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시설현황 :
-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425백만원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2,100백만원
 - 무료진료소 : 325백만원

<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추진경위 >

□ 추진경위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2,06,08)으로 기존 상담보호센터 중 시립시설 2개소를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 '16.1월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설치

▶ 영등포 일대 노숙인시설 현황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위치	건물 소유	시설 규모 (㎡)	종사자 (명)	입소자·취침 인원(명)	
						정원	현원
일시 보호 시설	응달샘드림인센터	경인로94길 6	법인 임차	490	10	150	106
	햇살보금자리	국회대로54길 41-16	법인 임차	528	7	74	55
자활 시설	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일시보호시설기능 포함)	버드나루로 24	시립	2,784	25	288	227
	광야홀리스센터	경인로100길 3	법인 (교회)	810	7	79	57
	두레사랑의쉼터	버드나루로 14가길 14	법인 (교회)	117	3	13	8

※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은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음(종사자 4명)

- ▶ '12년 영등포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설치 못함.

권역별	관할 자치구	거리노숙인 ('19.5.3. 실태조사)	관할센터
중부 및 동남권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역인근	473명	다시서기
강북권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구(서울역인근 제외),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129명	브릿지
서남권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89명	없음

-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 등 예산절감을 위해 시립시설을 우선 검토한 바, 시립 자활시설인 ‘영등포보현의집’을 종합지원센터로 전환기로 함.
 - ‘영등포보현의집’은 ‘04년부터 부속시설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겨울철·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수행기관으로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활동을 추진하였음.
- 집행부 전환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재 자활시설로 운영 중인 ‘영등포보현의 집’은 향후 ‘노숙인 종합시설’로 전환되면 현재의 자활시설 기능은 없어지고 건강정신팀을 포함한 일시보호 및 진료소로 운영될 예정임.
 - 20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등’은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2019년 제4차 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부서명	위탁 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심의결과
8	자활 지원과	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시설	신규 (공모)	-	적정

3 종합의견

- 본 위원회에 제출된 2건의 동의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신규 위탁 또는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수탁기관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금번에 제출된 위탁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바,
- 보호전문기관은 자활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전략이 계획적이며 각 사업별 목표 및 하위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에 표시하고 있는 사업효과성 평가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 및 평가는 2018년도 민간위탁동의 시에 지적한 기관운영 지표와 사업운영지표상에 정성 및 정량화 지표로써 표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 위탁업무의 사업자 선정 시 또는 선정 이후 수탁자의 업무집행능력 및 자체 내부시설 경영능력 등을 유사 민간운영시설과 비교하는 등 민간위탁시설 수탁자로서 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규 시설 및 재위탁·재계약 시 수탁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표를 표기함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복지정책실 소관의 수탁기관은 당초 설정한 목적과 목표를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되지 못하고 단지 운영 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 복지정책실은 앞으로 구체적인 목적과 중장기, 단기 등의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평가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달성 등 위탁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참 고 1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예시)

심 사 항 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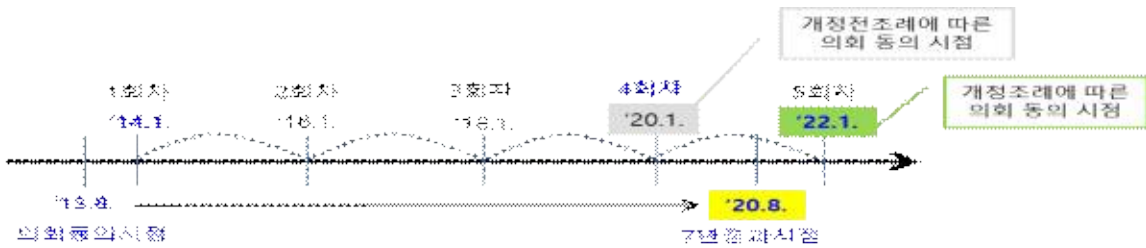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종합성과평가 대상인 경우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제공

[참고] 의회 동의 시점 예시

①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기간 2년 단위 사업] '13.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4.1월에 개시한 2년 단위 위탁사업 ⇒ '13.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20.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22.1.~)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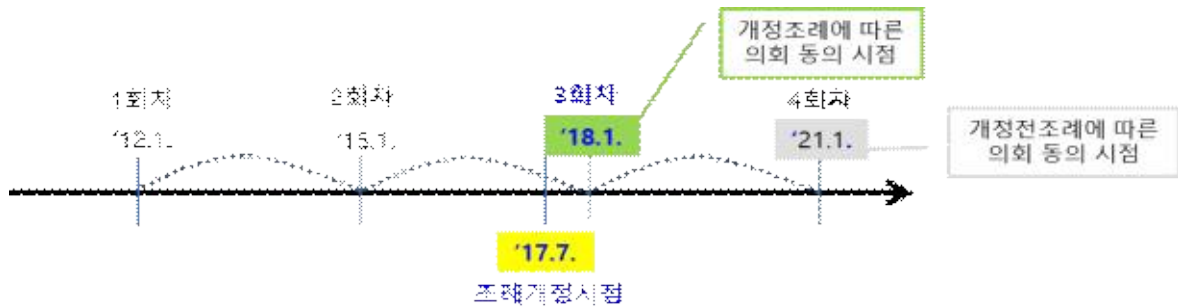


[위탁기간 3년 단위 사업] '14.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5.9월에 개시한 3년 단위 위탁사업 ⇒ '14.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21.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21.9.~)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②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

[위탁기간 3년 단위 사업] 의회 동의 규정 신설('12.3.)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12.1.)하여 그동안 한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3년 단위 위탁사업 ⇒ 조례개정('17.7.)으로 재위탁·재계약('18.1.~)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 토론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74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기관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나. 현 수탁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사업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 3층
- 설립일 : '10.11.9.
- 규모 : 728㎡(220평)
- 운영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 이용구)
- 운영인력 : 9명 (센터장 1명 외 8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0.2.7.~2023.2.6.(3년)
- 위탁사무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및 알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2019년 기준 1,136백만원
(일반회계 548백만원, 기금588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경위

- 최초 위탁
 - 위탁기간 : 2010.11.9. ~ 2013.11.8.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으로 심의·등록
 - 선정방법 : 공모절차 추진 후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
- 재계약 (재계약 1회)
 - 위탁기간 : 2013.11.9. ~ 2016.11.8.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자 심의
- 계약기간 연장
 - 연장기간 : 2016.11.9. ~ 2017.2.6.

○ 재계약 (재계약 2회)

- 위탁기간 : 2017.2.7. ~ 2020.2.6.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자 심의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광역자활센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지역 30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재무경영 컨설팅과 아이템 개발 등을 지원하고

○ 2개 자치구 이상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홍보·판로개척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촉진 관련 전문성과 지역사회 복지 사업·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의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지원 2. 취업지원 3. 교육훈련 4. 연구·조사활동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이종열 (☎ 2133-7496)